보도참고자료

स्ट्रिस 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 क्रिस्ट्रिस

보도시점

배포 시

배포

2023. 5. 17.(수)

##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(5.17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17일 제10차 회의에서, **회계처리기준을 위반**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**현대약품㈜ 등 3개사**에 대하여 **감사인지정**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	책임자	팀 장	송병관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윤정숙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손희원 (02-3145-7710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이목희 (02-3145-7290)
		담당자	부국장	이형석 (02-3145-7306)
		담당자	팀 장	최창중 (02-3145-7301)





##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3.5.17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현대약품㈜	[회사]	회 사 :
결산기 : 2013.11.30. 2014.11.30. 2015.11.30. 2016.11.30. 2018.11.30. 2019.11.30.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 : 의약품 제조업	('13년 11,622백만원, '14년 11,584백만원, '15년 13,059백만원, '16년 14,493백만원,	- 감사인지성 3년 - 검찰통보 (회사, 前담당임원)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현대약품㈜	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	한영회계법인 :
	① 판매장려금 및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3년 11,622백만원, '14년 11,584백만원, '15년 13,059백만원, '16년 14,493백만원, '17년 15,805백만원, '18년 18,958백만원, '19년 274백만원)	<ul><li>과징금</li><li>※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</li><li>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li></ul>
	- 감사인은 판매장려금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 - 현대약품(주)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
	② 미지급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5년 203백만원, '16년 1,724백만원, '17년~'19년 3.308백만원)	공인회계사 5인 :
	- 감사인은 미지급금 및 판매관리비 등 관련 감사	
	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변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· 코넥스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
		- 직무연수 6시간
		공인회계사 2인 :
		- 현대약품(주)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
		- 직무연수 4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메디포럼	【회사】	회 사 :
결산기 : 2018.12.31. 2020.12.31. 2021. 3.31. 2021. 6.30. 2021. 9.30. 비상장법인 업종 : 의약품 제조업	<ul> <li>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('18년 3,601백만원, '19년 3,984백만원, '20년 1,240백만원, '21년 1분기 753백만원, '21년 반기 785백만원, '21년 3분기 909백만원)</li> <li>- 회사는 거래처에 대한 금전대여시 허위 매입·매출 거래 조건의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고,</li> <li>- 관련 대여금 회수시 허위계상한 매출채권의 회수로 회계처리하고, 과대계상된 대여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익을 과대 인식함</li> <li>②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('19년 26,437백만원)</li> <li>- 회사의 약정위반에 따라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</li> <li>③ 외부감사 방해</li> <li>- 회사는 허위의 매입·매출거래 은폐를 위해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</li> </ul>	<ul> <li>감사인지정 2년</li> <li>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</li> <li>검찰통보 (회사, 前대표이사, 담당임원)</li> <li>시정요구</li> </ul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㈜디에이테크놀러지	【회사】	회 사 :
결산기 : 2018.12.31. 2019.12.31.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: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	<ul> <li>①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오류 등         ('18년 23,947백만원, '19년 959백만원)</li> <li>회사는 투자주식 취득과 독립적으로 체결된 손실 보증계약을 조건부대가로 보아 금융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고, 동 투자주식을 임의방법으로 평가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</li> </ul>	향후 금융위원회에서
	<ul> <li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li> <li>① 금융상품 등 관련 감사절차 소홀 ('18년 23,947백만원, '19년 959백만원)</li> <li>- 감사인은 회사가 조건부대가로 보아 인식한 금융자산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li> </ul>	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